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나. 재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다.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없음

5. 참고사항

o 관련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
o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o 예산관련 : 해당없음
o 협의사항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완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)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한다)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"대지보상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법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.

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%~30%해당액
3.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

제6조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